

근로복지공단 의료직(방사선사) 채용공고

“일터에 안심, 생활에 안정,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”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에서 근무할 역량 있는 직원을 모집합니다.

2026년 5월 29일

근로복지공단 이사장

1.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

□ 채용분야 및 인원 : 총 1명

채용분야	직군(직급)	근무예정지	채용예정인원	비고
방사선사	의료직(6급)	창원병원	1	-

※ 인사규정 제15조 제6항(채용)에 의거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일로부터 5년 동안 해당 근무기관에서 계속 근무(전보제한)

□ 근무기관 소재지

근무기관	소재지
창원병원	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1(중앙동)

□ 근로조건

○ (시보임용) 관련 규정에 의거 3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,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 정규직으로 임용

※ 시보임용된 직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가 ‘가’로 평정된 경우 임용제한

※ 시보기간은 「인사규정」 제19조, 「직원 채용업무 시행세칙」 제32조에 의거 적용

○ (보수수준) 공단 내부규정에 따름(경력기간 등에 따라 호봉산정)

※ 신규직원 초임은 알리오(ALIO) 공시자료 참고

2. 응시자격

□ 공통 응시자격 (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)

- 공단 「인사규정」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**붙임 1-1** 참조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**붙임 1-2** 참조
-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17(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
 - ※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(약식명령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)부터 일정기간(10년)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3(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
 - ※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(약식명령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)부터 일정기간(10년)
- (병역사항) 「병역법」 제 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
 - ※ 현재 군복무 중인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이 가능한 자
- (연령요건) 연령제한 없음(단, 임용일 기준 60세 미만(정년)인 자)
- (기타)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
 - ※ 임용예정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채용직군별 자격요건 :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

직렬(직급)	응시자격
방사선사(6급)	방사선사 면허 소지자

3. 채용절차 및 일정

□ 채용절차

응시원서 접수 → 서류전형(응시원서 기재사항을 토대로 응시자격 및 서류 심사) → 직업성격 검사 및 면접전형 → 서류검증 → 최종 합격자 발표 → 임용후보자 등록 및 신체검사 → 임용

□ 채용일정

전형절차	일정
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	▪ '26. 5. 29.(금) ~ '26. 6. 8.(월) 17:30
서류전형 합격자 통보	▪ '26. 6. 12.(금)
직업성격검사, 면접전형 및 서류검증	▪ '26. 6. 12.(금) ~ '26. 6. 18.(목)
최종합격자 통보	▪ '26. 6. 23.(화)
임용후보 등록	▪ '26. 6. 23.(화) ~ '26. 6. 26.(금)
임용일(예정)	▪ '26. 7. 1.(수)

4. 응시원서 접수

□ 접수기간 : '26. 5. 29.(금) ~ '26. 6. 8.(월) 17:30:00

○ 제출서류 : 응시원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 각 1부

※ **붙임 2** 양식 참조

○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(마감 당일 17:30:00 까지 도착·수신분에 한함)

[이메일 전송 관련 유의사항 안내(예시)]

① (메일제목) **응시원서 제출[홍길동-OO병원-방사선사]**

② (붙임 PDF파일명) **[홍길동-OO병원-방사선사]**

◇ **응시원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를 PC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응시원서 하단에 서명(날인) 후 스캔 → 1개의 PDF 파일로 변환**

※ **현 직장, 학교 등을 알 수 있는 메일 사용불가, 포털메일 사용(예. 네이버, 다음, 지메일 등)**

※ **접수 마감일 지원자 폭주로 반송 등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**

※ **또한 메일 전산 과부하 등의 사유로 메일이 반송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채용 담당자의 수신 완료 회신메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**

○ 접 수 처 : 근로복지공단 입사지원서 전용 이메일

전화번호	이메일주소
052-704-7632	head9in@comwel.or.kr

5. 서류전형

□ 합격자 발표: '26. 6. 12.(금) 예정 ※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

○ 서류전형 합격자

채용예정인원	합격자 범위
1~3명	채용예정인원의 5배수

※ 최하위 동점자 전원 선발

○ (정량평가) 응시원서 상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항목별 점수 부여

- 학교성적, 전문자격, 전산자격 등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이며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

□ 서류전형 항목별 배점

구분	서류전형(정량평가 100점 만점)		우대가점 (최대가점 10점)
	직업기초능력	직무수행능력	
방사선사 (의료직 6급)	○ 학교성적(30점)	○ 직무경력(30점) ○ 전산자격(20점) ○ 전문자격(20점)	○ 취업지원대상자 (10/5점) ○ 장애인, 산재, 의상자(5점) ○ 기타(5점), 경력가점(3점)

※ 각 평가항목 내 평가기준에 따라 차등점수 부여하며 평가세부기준은 비공개하므로, 보유하고 있는 자격사항을 모두 기재 권고

○ (학교성적) 최종학교 성적기준으로 평가

※ (대학교) 전체평균 학점으로 점수 평가(편입, 학점은행제는 별도 적용)

※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 관련 학과 전공 이수자에 대해서 국가시험에 응시가 가능함에 따라 채용직무 연관성이 높음으로 서류전형 시 학교성적(학점) 배점 부여

- ① 성적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입
- ②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최종학교로 인정
- ③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학원 성적만 산정
- ④ 편입의 경우 편입이후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
- ⑤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점은행제 이후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
- ⑥ 전공심화의 경우, 전공심화 이수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

○ (직무경력) 채용 자격요건에 명시된 자격증 취득 이후, 채용예정직과 동일한 업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

※ 서류전형 합격 이후 증빙서류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경력증명서 원본) 제출

○ (전산자격) 정보처리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컴퓨터 활용능력 1급·2급, 워드프로세서(구 1급)

※ 동일평가항목 내 2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

○ (전문자격)

구분	항 목
방사선사	▪ 국내전문방사선사(전문방사선사시험원) - 자기공명영상(MRI)전문, 전산화단층촬영(CT)전문, 유방전문, 임상초음파전문(복부, 산부인과, 유방, 심장, 혈관, 근골격), 투시전문, 영상정보관리전문, 치료전문, 혈관 중재전문, 핵의학전문, 치과전문, 방사선의학물리사, 방사선안전관리전문, 방사선정도 관리전문 ▪ 국제전문방사선사(전문방사선사시험원) - 자기공명영상(MRI)전문, 전산화단층촬영(CT)전문, 유방전문, 치료전문 등 ▪ 진폐건강진단 정도관리 홍부촬영분야 교육 수료증 또는 특수건강진단 정도 관리 홍부촬영분야 교육 수료증(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)

※ 2가지 항목 이상에 해당할 경우 합산하여 점수부여 가능, 최대 20점까지 점수부여 가능

□ 우대가점(사회형평적 요소 등)

항목/점수		세부평가기준
취업지원 대상자*	10점	•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10%를 가점하는 자
	5점	•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5%를 가점하는 자
산재근로자 본인 및 자녀	5점	•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
	3점	•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
장애인	5점	•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
의사상자	5점	•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
생활보호 대상자	5점	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

경력단절 여성	5점	• 혼인·임신·출산·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을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한 여성 •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
기타	5점	•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 •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• 「아동복지법」 제16조 및 제16조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(자립준비청년)* *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에 따른 청년에 한함
경력가점	최대 3점	• 공단병원(구. 한국산재의료원 포함)에서 청년인턴·기간제·공무직으로 채용 예정직과 동일업무 분야 6개월 이상 근무한 자(근무경력에 따라 최대 3점 차등 부여)

*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

※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3항에 따름
 - 모집단위별(경쟁유형·직렬·권역)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(예외: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) 가점 부여,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

※ 우대항목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유리한 것 한가지만 적용

6. 직업성격검사 및 면접전형

□ 직업성격검사 : '26. 6. 12.(금) ~ '26. 6. 18.(목) 예정

○ 대상자 : 서류전형 합격자

○ (실시일자 및 방법) 면접전형 이전 일반적 성격요인 검사 및 대인관계 구축/유지 검증을 위한 조직(부)적응성 검사 개별 온라인 실시

□ 면접전형 : '26. 6. 12.(금) ~ '26. 6. 18.(목) 예정

○ 대상자 : 서류전형 합격자

○ 장소 : **공단본부 또는 소속병원**

※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, 구체적 전형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별도 공지

※ 면접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유효기간 내 여권, 장애인 복지카드, 국가보훈등록증) 지참

- 전자(모바일)신분증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발급한 모바일운전면허증 및 모바일

국가보훈등록증에 한해 인정

○ 면접전형 평가방법 및 배점 : 집단 또는 개별 면접 실시

- NCS 분류체계에 따른 직무기술서상을 바탕으로 직업기초능력(의사소통, 대인관계), 직무수행능력(도전정신, 전문성, 직업윤리, 자기개발) 등 평가
- 가산점수를 포함한 면접점수가 평균 5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

□ 사회 형평요소 우대

항목/점수		세부평가기준
취업지원 대상자*	10점	•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10%를 가점하는 자
	5점	•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5%를 가점하는 자

*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, 「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

※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3항에 따름

- 모집단위별(경쟁유형·직렬·권역)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(예외: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) 가점 부여,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순위 부여

□ 증빙서류 제출(면접전형 시 반드시 지참)

지원자 편의 제고를 위해 응시원서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하며, **채용 관련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시 직접 제출**

구분	제 출 서 류	발급 유효기간
공통 사항	① 해당 채용분야 면허(자격)증 사본 1부	기한 없음
	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(석·박사의 경우 학위증명서 포함)	기한 없음
	③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(전 학년 성적의 평균평점이 기재된 것에 한함) * 편입의 경우, 편입이후 학교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제출 * 학점은행제의 경우,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제출 * 전공심화의 경우, 전공심화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제출	기한 없음
	④ 병적증명서 1부(남성의 경우에 한하며, 세부항목 모두 필수 기재)	서류검증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

서류 전형	①-1 (직무경력) 경력증명서(퇴직한 경우), 재직증명서(재직 중인 경우)	기한 없음
	①-2 (직무경력) 해당직군 업무 관련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	서류검증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
	② (전산자격) 정보화자격증 사본	기한 없음
	③ (전문자격) 채용계획상 반영된 해당직군 별도 추가자격요건 관련 증빙서류	기한 없음
우대가점 (사회형평 적 요소 등 해당자에 한함)	① (취업지원대상자) 취업지원(국가보훈) 대상자 증명서	서류검증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
	② (산재근로자 본인 및 자녀)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* 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	
	③ (장애인) 장애인증명서(지자체발급)	
	④ (의사상자) 의사상자 증서 사본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확인서 * 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	
	⑤ (생활보호대상자)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 계층 증빙 서류 사본	
	⑥ (경력단절여성)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, 가족관계증명서	
	⑦ (다문화가족) 다문화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* 가족관계증명서(지원자명의로), 혼인관계증명서(부/모) * 부 또는 모 한국국적 취득 전: (부/모)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* 부 또는 모 한국국적 취득 후: 기본증명서(상세-이전국적표기), 국적취득사실증명서	
	⑧ (북한이탈주민)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	
	⑨ (자립준비청년) 자립수당 수급자확인서, 보호종료확인서	
	⑩ (경력가점) 공단병원(구. 한국산재의료원 포함)에서 청년인턴·기간제·공무직 으로 채용예정직과 동일업무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(재직)증명서	기한 없음

※ 다만, 해당 발급기관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인정

7. 최종합격자 발표

□ 최종 합격자 발표 : '26. 6. 23.(화) 예정 ※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

○ (선발기준) 서류검증 결과 결격(부적격) 사유가 없고, 가산점수를 포함한 면접점수가 평균 5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

※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3항에 따름
- 모집단위별(경쟁유형·직렬·권역)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(예외: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) 가점 부여,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

- 최종합격자 발표일 부터 6개월 내에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또는 퇴사 시 공단사정에 따라 후보합격자 임용 가능

8. 임용후보자 등록 및 신체검사

□ 임용등록 및 신체검사 기간 : '26. 6. 23.(화) ~ '26. 6. 26.(금) 예정

- 신체검사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소속병원에서 실시

- 임용등록 시 제출서류: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및 각서 등

※ 공단 소정양식으로 최종 합격자 발표시 공지

□ 임용일 : '26. 7. 1.(수) 예정

※ 임용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

9. 기타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반드시 '응시원서 작성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안내'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, 응시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에서 허위 사실 기재 또는 허위증빙서 제출 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응시원서 작성 및 면접시험 과정에서 연령, 출신학교명, 출신지역명, 가족 관계 등 실력평가와 무관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3에 따라 수집, 요구를 금지하는 개인정보 및 입사지원서 이메일, 자기소개서 등에 학교, 가족관계, 출신지, 성별 등은 간접적 표현으로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(직·간접적 표현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)

- 응시자격 및 자격증 유효여부 등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
- 최종합격자의 경우도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, 「인사규정」 제14조(결격사유) 9호, 「직원 채용업무 시행세칙」 제30조(신체검사) 3항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

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로 판명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.

- 전형별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며, 180일 경과 후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단,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응시자(탈락자 포함)에게 「개인정보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」를 구비받아 응시자의 성명, 연락처, 이메일을 전형단계별 평정표에 기록하여 영구 보관

- 입사지원자가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 부터 14일 이내 채용사이트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* (신청방법) 채용 이의신청 양식 작성 후 접수처 이메일로 스캔본 송부
* (이의신청 처리 예외) ① 해당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② 평가와 관련한 개인정보(응시자, 시험출제자, 면접위원 등) 및 지적재산권 등 타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③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
* 평가기준 및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 문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답변하지 않음

- 부정합격자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,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서는 합격이 취소되고,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하며, 관련자는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공단은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사실 인지 시 「직원 채용업무 시행세칙」에 따른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.

* (신청방법) 헬프라인 레드휘슬(<http://www.redwhistle.org>)
* (구제시기) 피해발생 인지 후 즉시
* (피해자 구제)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후 적정 전형단계 시험 기회 부여

- 공단 내부규정 등에 따라 이사장의 허가 없이 겸직 및 영리활동(사업자 등록 등)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.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병원 인사담당에게 문의하거나, 근로복지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[붙임 1-1] 공단 인사규정 제14조(결격사유)

제14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6의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3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- 6의4. 공단 입사 이전 또는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병역 의무자로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
8.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,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
9. 장기요양이 필요한 전염성 질환자 및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장애인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정된 자
10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11.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[붙임 1-2]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

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응 시 원 서

응시번호	(공란)	성 명	(한글)	(한자)
응시기관 (직군 및 직렬)	창원병원 (의료직 방사선사)	연락처	(휴대전화)	(비상연락처)
		이메일		

우대 사항 (사회 형평 사항)	보훈대상	☐ 해당(가점비율 %)	☐ 비해당	다문화가족	☐ 해당	☐ 비해당
	산재근로자	☐ 해당(본인 / 자녀)	☐ 비해당	북한이탈주민	☐ 해당	☐ 비해당
	의사상자	☐ 해당(본인 / 자녀)	☐ 비해당	차상위 또는 기초생활수급자	☐ 해당	☐ 비해당
	장애여부	☐ 해당	☐ 비해당	자립준비청년	☐ 해당	☐ 비해당
	경력단절여성	☐ 해당(경력단절시작일 :) ☐ 비해당		공단병원 경력가점	☐ 해당(청년인턴 / 기간제 / 공무직) ☐ 비해당	

교육 훈련 사항	교육구분	교육분야	교육과목명	교육내용	이수시간
	☐ 학교교육 ☐ 직업훈련 ☐ 평생교육				
	☐ 학교교육 ☐ 직업훈련 ☐ 평생교육				
	☐ 학교교육 ☐ 직업훈련 ☐ 평생교육				

경력 경험 사항	활동구분	소속기관명	활동기간	활동내용
	☐ 경력사항 ☐ 경험사항		. . . ~ . . . (년 월)	
	☐ 경력사항 ☐ 경험사항		. . . ~ . . . (년 월)	
	☐ 경력사항 ☐ 경험사항		. . . ~ . . . (년 월)	

자격 취득 사항	자격증명	발급기관	취득일자	자격증명	발급기관	취득일자

최종학교성적	점수체계	대학교 이상 성적의 경우
	점 수	(점/ 만점)

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<유의사항>

1. 응시자 부주의로 응시 자격요건에서 정한 자격증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적격으로 간주함.
2. 합격 또는 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됨.

※ 채용공고문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을 숙지하여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※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 관련 학과 전공 이수자에 대해서 국가시험에 응시가 가능함에 따라 채용직무 연관성이 높음으로 서류전형 시 학교성적(학점)을 수집하고 있습니다.

20 . . .
응시자 (인)

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

응시원서 작성 안내

1. 우대사항(사회형평사항 등)

- 채용공고문의 우대사항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기재

2. 교육훈련 사항

- 채용분야 관련 교육 이수사항 위주로 기재

※ 주의: 출신학교명은 절대 기재 불가

※ 교육훈련사항은 채용예정 직군관련 전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함

3. 경력·경험 사항

- '경력' :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기간 일했던 이력을 의미

- '경험' : 직업 외적인(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) 활동으로 교육과정 내 수행평가, 산학, 프로젝트, 연구회, 동아리/동호회, 재능기부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음

① 경력사항은 채용 자격요건에 명시된 자격증 취득 이후 시점부터 기재하며, 채용분야(직렬) 관련 경력만 기재

② 기재되는 경력사항이 추후 제출하는 증빙자료(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, 경력증명서)와 일치되도록 작성

※ 경력사항 기재 시에 추후 사실관계 증빙을 위해 기관명은 블라인드처리 없이 기재 바랍니다.(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사항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·경력증명서 대조)

③ 경력사항은 년, 월, 일까지 정확히 기재 (예시) 2010.03.02.~2013. 04.30.(3년 1월)

※ 년, 월, 일까지 적지 않은 경우, 경력 산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④ 재직중일 경우 활동기간 종료일은 재직중으로 표기

(예시) 2023.03.02.~재직중(1년 2월)

※ 응시원서에 경력·경험사항 미구분 시 서류전형 직무경력 점수 "미반영"

4. 자격취득 사항

- 채용분야 면허 혹은 자격은 반드시 기재하고 기타 각종 서류전형 항목에 명시된 자격증(전산자격, 전문자격) 보유 시, 보유하고 있는 자격사항 모두 필수 기재

※ 급수가 구분되어 있는 자격증에 대해 급수 미기재 시 "미반영"

※ 자격취득일은 년, 월, 일 까지 정확히 기재

5. 최종학교 성적

○ (학교성적) 최종학교를 기준으로 평가

- (대학교) '전체평균' 학점으로 점수 평가(편입, 학점은행제는 별도 적용)

- *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최종학교로 인정
- *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학원 성적만 산정
- * 편입의 경우 편입이후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
- *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점은행제 이후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
- * 전공심화의 경우, 전공심화 이후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

※ **최종학교 기준으로 학교성적 미기재시 부적격(불합격) 처리**

- * 예) 대학원 졸업자가 대학교 성적을 기재한 경우(부적격 처리)
- * 예) 대학교 편입의 경우 편입이후 성적만을 평가하는데도 불구하고, 편입이 전 성적까지 합산하여 평균점수로 기재한 경우(부적격 처리)

- **성적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작성**

- * 예) 3.232점의 경우 3.23점 / 3.236점의 경우 3.24 점으로 기재

※ **실제성적보다 학교성적을 높게 작성시 부적격(불합격) 처리**

※ **추후 기재내역이 증빙자료와 상이한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니, 학교성적 증명서, 경력확인서, 각종 자격증 등 증빙자료 확인 후 정확히 기재**

6. 응시원서 작성 후 출력하여 하단에 응시자 서명 후 PDF로 제출

※ **정해진 응시원서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으로 접수 시 부적격 처리**

7. 블라인드 채용에 따른 유의사항

※ **지원자 연령, 출신학교명, 출신지역명, 가족관계 등 실력평가와 무관한 사실 언급은 불가하며 간접적으로도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.**

8. 합격 또는 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됨

자기소개서

귀하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채용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열린소통, 지원분야 직무이해, 전문성, 책임감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 주십시오. (필요시 별지사용 가능) ※ 지원자 성명, 연령, 출신학교명, 출신지역명, 가족관계 등 직무평가와 무관한 사실 언급은 불가하고, 간접적으로도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.	
열린소통 (공감능력, 상담능력, 협력성, 사회봉사활동 등)	
지원분야 직무이해 (지원 직무 및 사업 이해도, 직무경력)	
전문성 (자원관리능력, 직무관련 자격취득, 수상경력 등)	
책임감 (적극성, 문제해결능력 등)	

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		
근로복지공단은 채용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주체(응시자 본인)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,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.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			
☐ 개인정보 수집·이용내역 <유의사항> 응시자가 선택한 지원정보 및 가산점 정보 유무에 따라 “필수” 또는 “선택”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. 《필수항목》			
수집·이용 항목	수집·이용 목적	수집근거	보유 및 이용기간
성명, 연락처, 이메일	채용 절차의 진행 및 관리,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	정보주체의 동의	영구
※ 정보주체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위 필수적 정보 수집·동의를 채용심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. 따라서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채용심사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. 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(동의함 ☐, 동의하지 않음 ☐)			
《선택항목》			
수집·이용 항목	수집·이용 목적	수집근거	보유 및 이용기간
교육, 경력, 자격취득	채용 절차의 진행 및 관리 및 선발 참고 자료	정보주체의 동의	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80일까지
※ 정보주체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가산점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(동의함 ☐, 동의하지 않음 ☐)			
☐ 민감정보 처리 내역			
수집·이용 항목	수집·이용 목적	수집근거	보유 및 이용기간
사회형평(장애, 보훈 등) 해당여부	편의제공 적용여부 확인 등 채용절차 진행, 우대 및 선발 참고 자료	정보주체의 동의	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80일까지
※ 정보주체는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편의제공 및 가산점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☞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(수집·이용)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(동의함 ☐, 동의하지 않음 ☐)			
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			
제공받는자	제공목적	제공 항목	보유 및 이용기간
취업지원, 장애관련 제공기관, 학위수여기관, 자격증 시험 시행기관 등	입사지원서 접수 및 자격 진위여부 확인	성명, 생년월일, 취업지원 대상 관련사항	조희결과 회신 후 즉시 폐기
※ 정보주체는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불합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(동의함 ☐, 동의하지 않음 ☐)			

20 년 월 일

응시자(본인)

(서명 또는 인)

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

[붙임 3] 직무기술서

【 NCS 기반 직무기술서 : 방사선사 】

직무 분야	영상의학	NCS 분류체계			
		대분류	중분류	소분류	세분류
		06.보건/의료	01.보건	01.의료기술지원	04.방사선검사
주요사업	○ 생명을 존중하며, 인간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기 위해, 최상의 진료, 교육, 연구, 공공 보건의료 등 다양한 의료관련 사업수행				
직무수행 내용	○ (영상의학) 환자의 질병 및 장애를 진단하고,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방사선 장비를 조작하여 방사선 촬영을 수행하는 업무 등				
능력 단위	○ (영상의학) 01. 환자 교육 및 관리 02. 방사선 검사 03. 피폭 관리 04. 정도 관리 05. 영상 관리 06. 장비관리				
전형방법	○ 공고문 참조				
일반요건	○ 무관				
교육요건	○ 무관				
자격요건	○ (필수) 방사선사 자격 면허소지자 ※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 관련 학과 전공 이수자에 대해서 국가 시험에 응시가 가능함에 따라 채용직무 연관성이 높음으로 서류전형 시 학교성적(학점) 배점 부여				
필요 지식	○ (영상의학) 방사선 안전관리, 의료기사법 및 방사선 안전 관리법, 초음파 검사에 관한 지식, 촬영방법에 대한 지식,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지식, 조영제 부작용 관련 사항, 방사선방호의 기준 및 원칙, 방사선 병리학, 영상 해부학, 인체 해부학, 인체 생리학, 공중 보건학, 보건물리학 개론 지식, 방사선학 개론 지식, 방사선 검사 이론 지식, 디지털 영상처리 관련 지식, PACS 및 원격화상 시스템 관련 지식 등				
필요 기술	○ (영상의학) 방사선 안전 관리, 방사선 촬영코드 기록 및 관리 능력, 초음파 업무 능력, MRI 촬영능력, 촬영정보 수집 및 습득 능력, 방사선 일반촬영능력, 전산화단층촬영(CT) 능력, 방사선 관련 의료장비 관리 능력, 원서 및 최신 방사선학회의 지식 등의 영어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언어능력, 외국 환자들과의 회화 능력 등				
직무수행 태도	○ (영상의학) 기기 조작의 정확성,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우선시하는 태도, 새로운 기술 습득을 위한 자기개발,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태도, 환자에 대한 친절한 태도, 작업 협력 및 배려하는 자세, 관련부서 업무이해와 상호존중, 정확한 촬영을 위한 성실하고 꼼꼼한 태도				
직업기초 능력	○ 의사소통능력, 대인관계능력, 문제해결능력, 수리능력, 기술능력, 자원관리능력, 정보능력, 직업윤리				
참고 사이트	○ www.ncs.go.kr 홈페이지 → NCS 학습모듈 검색				

[붙임 4] 채용이의신청서

이의신청서			
성명		채용분야	
이메일		연락처	
이의신청 내용	※ 신청시 유의사항 ○ 최종합격자발표일부터 14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. ○ 육하원칙에 의해 자세하게 기술하되,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 주시고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만 기재 바랍니다. ○ 채용과 무관한 문의, 질의사항,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사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. ○ 회신은 이메일 또는 연락처를 통해 시행합니다. ○ 사실관계 확인기간에 따라 답변이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		

20 년 월 일

신청인

(인)

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

[붙임 5] 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 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
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